##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82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고동진·박덕흠·강승규

송언석 · 서명옥 · 박충권

주호영 · 김소희 · 조경태

박성훈 • 성일종 • 강대식

강선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 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무분별하게 마녀사 냥식의 비방을 일삼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인하 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 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3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5년"으로, "10년"을 "15년"으로, "5천만원"을 "1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제70조(벌칙) 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u>	<u>7년</u> <u>2억원</u> -
<u>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	②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u>15년</u>
<u>년</u> 이하의 징역, <u>10년</u> 이하의	<u>15년</u>
자격정지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15억원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